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7

발의연월일: 2024. 6. 12.

발 의 자:이해식・서영교・박상혁

윤준병 · 정을호 · 한병도

염태영 · 김태선 · 황명선

박정현 • 서영석 • 강선우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의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 침해 사례가 종종 있어 더욱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지난 24년 1월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이 신설됨.

그러나 '피해자의 인권'으로 한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가족 및 유족 등이 해당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음.

이에 국가 등에 재난 피해자, 가족 및 유족의 인권 보호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4조).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피해자의"를 "피해자, 가족 및 유족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②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	③
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u>피해자의</u>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u> 및 유족의</u>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